

수원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1가합14055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변민기

피고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양선영, 여철기

변론 종결2023. 5. 3.

판결 선고2023. 7. 1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2023. 4. 27.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1. 피고와 소외 D[E생, 주소: 밀양시 F건물, G호], H 사이에 체결된 2020. 10. 21.자 주식매매계약 중 D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주권 중 169,054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나. 원고 B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주권 중 332,229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각 인도하라.

3.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주식 중 1,690,540주에 관하여 원고 A 명의의 계좌로 이전하는, 나. 원고 B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주식 중 3,322,290주에 관하여 원고 B 명의의 계좌로 이전하는, 각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A은 아들인 D에 대하여 D이 위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합계 21억 원 상당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 존재하고, 원고 B은 아들인 D에 대하여 2019. 3. 22.자 확약에 따른 약정금 채권과 횡령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비롯하여 합계 41억 2,7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존재한다(피보전채권).

나. 그런데 D은 2020. 10. 21. 채무초과상태에서 본인의 아들인 H와 함께 본인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주)의 주식 전부를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사해행위).

다. 그렇다면 D으로서의 본인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위 주식을 처분할 경우 원고들을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주식매매계약 중 D에 대한 부분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로서는 원상회복으로서 위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함과 함께 이에 관한 전자등록주식을 원고들 명의의 계좌로 이전하는 전자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채무자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행사할 수 없다면 그 채권을 행사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청구도 인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5151판결, 2012. 3. 29. 선고 2011다81541 판결 등 참조).

2) 원고 A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1,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보전채권이라고 주장하는 무단 이체 등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21억 원과 관련하여, 별도로 D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가합10285), 1심 법원은 2021. 11. 12. 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 부분 1심 판결은 2023. 1. 19. 원고 A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위 관련 사건을 '이 사건 피보전채권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위 원고가 D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패소 확정된 채권 외에 다른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나 주장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에게 D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에게 피보전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 A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 B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B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원고 B은 D이 위 원고에 대하여 합계 41억 2,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에 대해서도 이 사건 피보전채권 관련 소송에서 판단이 이루어졌고, 그 항소심 법원은 2023. 1. 19. 원고 B이 주장하는 채권 중 5억 7,600만 원만을 인정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사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나14697],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상고하였으나, 2023. 6. 15. 위 상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이 부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현재 원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피보전채권 관련 소송에서 인정된 5억 7,600만 원을 초과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의 피보전채권 관련 주장은 5억 7,600만 원에 한하여 이유 있다.

2)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가) 처분행위 당시에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가 자력을 회복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에는 채권자를 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되어 채권자취소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다는 사실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484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현재(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 D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적극재산	① I 주식 501,283주 ¹⁾ 이 사건 사해행위로 처분된 주식이다.	700,000,000
② J 주식 446,705주	500,896,980	
③ 토지 등 부동산		
합계[A]	1,200,896,980	
소극재산	① 원고 B에 대한 채무(이 사건 피보전채권)	576,000,000
합계[B]	576,000,000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한 금액 [A-B]	624,896,980	

다) 한편 원고 B는 D의 소극재산에 ① D이 (주)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 86억 8,000만 원, ② (주) 관련 보증채무 약 47억, J 차입금 관련 보증채무 약 25억 원이 추가로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원고의 2023. 3. 6.자 준비서면 15면).

(1) 먼저 (주)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주)의 주주로서 위 회사를 대표하여 D을 상대로 'D이 (주)의 이사회를 장악하여 K에 합계 86억 8,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에게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상법 제399조에 기하여 86억 8,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사실(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0가합10786), 위 1심 법원은 2022. 2. 11. 'D이 (주)의 이사회를 장악하여 위와 같이 대여함으로써 위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대여는 원고 A의 결정에 따라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2023. 5. 18. '위 대여행위로 (주)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부산고등법원(창원)2022나11169]을 인정할 수 있는바(원고 A이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결국 원고 B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현재 (주)에 대하여 86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또한 (주) 및 J 차입금 관련 각 보증채무에 관하여도 보건대, D은 위 각 회사의 차입금과 관련한

지급보증계약을 각각 해지하여 현재로서는 지급보증인으로서의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피고의 2021. 5. 31.자 준비서면 25쪽2) 참조, 을 제9, 10호증), 달리 현재에도 계속하여 D이 위와 같은 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그렇다면 설령 원고 B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위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D이 채무초과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 5면 기재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어도 이 사건 변론 종결 시점에 D이 채무초과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 B의 이 사건 청구는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D이 관련사건에서 5,337,000,000원의 가압류해방금액을 공탁하였는바(을 제7호증), 다른 채권자가 이에 대해 압류하였다는 사정이 없어3) 원고 B은 해당 공탁금에 대해 쉽게 피보전채권을 실현할 수 있어 보인다].4)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민상

판사양해인

판사정요진

별지

- 1) 이 사건 사해행위로 처분된 주식이다.
- 2) 피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
- 3) 해방공탁금에 대해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491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57398 판결, 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 4) 피고는 이를 D의 적극재산으로도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실제 위 금액은 다른 사람이 납부했다고 다투고 있으나, 최소한 D이 위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자임은 인정된다.